

[별표 1의4] <신설 1999.7.1, 2006.5.3>

과징금의 산정기준(제12조의3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, 이 경우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등(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)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 가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.

다. 연간매출액은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한다. 다만, 신규사업 또는 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간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산정한다.

라.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제2호 나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.

2. 과징금의 산정방법

가.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의 산정방법

등급	연간매출액(단위 : 원)	사업정지·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(단위 : 천원)
1	1억 이하	30
2	1억 초과 ~ 3억 이하	70
3	3억 초과 ~ 5억 이하	120
4	5억 초과 ~ 7억 이하	160
5	7억 초과 ~ 10억 이하	200
6	10억 초과 ~ 13억 이하	240
7	13억 초과 ~ 16억 이하	280
8	16억 초과 ~ 20억 이하	320
9	20억 초과 ~ 25억 이하	360
10	25억 초과 ~ 30억 이하	400
11	30억 초과 ~ 40억 이하	440
12	40억 초과 ~ 50억 이하	480
13	50억 초과 ~ 70억 이하	520
14	70억 초과 ~ 100억 이하	560
15	100억 초과 ~ 150억 이하	600
16	150억 초과 ~ 200억 이하	640
17	200억 초과 ~ 300억 이하	680
18	300억 초과 ~ 400억 이하	720
19	400억 초과 ~ 500억 이하	760
20	500억 초과	800

나. 액화석유가스저장능력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방법

종별	액화석유가스저장능력	사업정지·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1일 당 과징금의 금액(단위 : 천원)
1종	30톤 이하	30
2종	30톤 초과 ~ 100톤 이하	100
3종	100톤 초과 ~ 500톤 이하	400
4종	500톤 초과 ~ 1,000톤 이하	600
5종	1,000톤 초과	800